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776

발의연월일: 2021. 10. 5.

발 의 자 : 추경호 · 이종배 · 엄태영

김예지 · 이주환 · 성일종

조명희 · 김상훈 · 백종헌

김선교 · 김용판 · 윤창현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,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. 또한 벤처기업 간의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간 주식을 서로 교환하거나 벤처기업 주식을 매각한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교환하거나 매각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.

그런데 이러한 벤처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는 2021년 12 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.

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으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(안 제16조의2, 제16조의3, 제16조의4, 제46조의7

및 제46조의8).

#### 법률 제 호

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제1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

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 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의2(벤처기업 주식매수선	제16조의2(벤처기업 주식매수선
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)	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)
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	①
원(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	
서 "벤처기업 임원 등"이라 한	
다)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	
<u>2021년 12월 31일</u> 이전에 「벤	<u>2024년 12월 31일</u>
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	
법」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	
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「상	
법」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	
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	
선택권(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	
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)	
을 행사(벤처기업 임원 등으로	
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	
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	
한다)함으로써 얻은 이익(주식	
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	
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	
말하며,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	
포함한다. 이하 이 조부터 제16	
조의4까지 "벤처기업 주식매수	

선택권 행사이익"이라 한다)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 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 지 아니한다.

#### ② (생략)

- 제16조의3(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)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1년 12 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 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(제16조의2에 따라 비 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)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. 다만, 주 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 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
  - 1. ~ 3. (생 략)
  - ②·③ (생 략)
- 제16조의4(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 례)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벤처

② (현행과 같음)
제16조의3(벤처기업 주식매수선
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) ① -
<u>2024년 12</u>
월 31일
,,
<b>.</b>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16조의4(벤처기업 주식매수선
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
례) ①
····

기업 임직원"이라 한다)가 202 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 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 권(이하 이 조에서 "적격주식 매수선택권"이라 한다)을 행사 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 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 에는 「소득세법」 제20조 또 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## 1. • 2. (생략)

## ② ~ ⑧ (생 략)

제46조의7(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 세특례) ① 「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권상장법인(코넥스상장기업 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)을 제외한 벤처기업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・인

<u>202</u>
4년 12월 31일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세46조의7(전략적 제휴를 위한
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
세특례) ①

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벤처기업등" 이라 한다)의 주주(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 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. 이 하 이 조에서 같다)가 소유하 는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제휴법 인"이라 한다)이 보유한 자기 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(발 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 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. 이 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 자하고 그 제휴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 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 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(이 하 이 조에서 "주식교환등"이 라 한다)로 인하여 취득한 제 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

<u>2024년</u>
12월 31일

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.

- 1. ~ 3. (생 략)
- ②·③ (생 략)

제46조의8(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)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 내 기업(이하 이 조에서 "매각 대상기업"이라 한다)의 주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 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1 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(이하 "재투자"라 한다)를 한 경우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 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

<u>.</u>
· 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46조의8(주식매각 후 벤처기업
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)
①
<u>2024년 12월 31일</u>
2024년 12월 31월

처분(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제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)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. 다만,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~ 3. (생략)
- ②·③ (생 략)

,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